

영상검사 운영 규정

관리번호	W-3.3.5	제정일	2013년 02월 15일
승인책임자	병원장	최근개정일	2016년 10월 31일
검토책임자	규정관리위원회위원장	시행일	2016년 12월 01일
주무부서	영상의학과	검토주기	3년
관련근거	의료기관인증기준 3.3.5	검토예정일	2019년 10월 30일

|. 목적

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안전하고 정확한 영상 검사를 위하여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.

Ⅱ. 정의

영상검사 : 진단용 의료기기(일반촬영장비, 초음파, CT, BMD, MRI, MAMMO, 투시장비 등)를 이 용하여 진단 및 시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Ⅲ. 정책

- 1.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영상검사를 수행한다.
- 2.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영상결과를 판독한다.
- 3. 응급환자를 위한 영상검사가 항상 가능하게 한다.
- 4. 안전하고 정확한 영상검사를 위하여 검사 전 준비사항을 확인한다.
- 5. 정확한 영상검사를 위해 사전정보를 확인한다.
- 6. 정도관리를 수행하고 관리한다.
- 7. 영상검사 외부 의뢰체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.

Ⅳ. 절차

- 1. 영상검사 시행자
 - 1) 자격 및 면허

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18조,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 거하여 전문의와 방사선사의 자격을 갖춘 윌스기념병원 직원에 국한되어 실시 할 수 있다.

2) 교육

의료법 30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20조,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통해 연간 8점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3) 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.
- 4)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 및 비 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·초음파진단기의 취급,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를 시행한다.
- 2. 영상판독 시행자
 - 1) 자격 및 면허 :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18조에 의거하여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자격을 갖춘 윌스기념병원 직원에 국한되어 실시할 수 있다.
 - 2) 교육 : 의료법 30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20조에 의거 연간 8점 이상 보수교육을 통해 이수하



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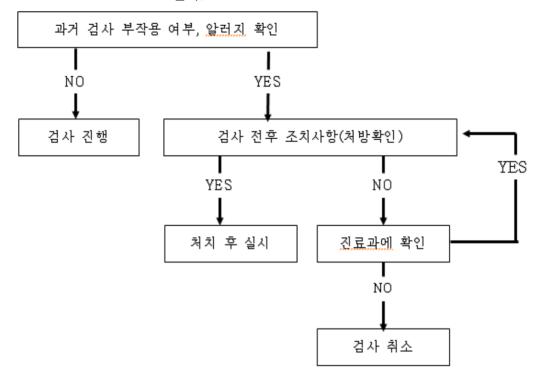
- 3. 응급환자를 위한 영상검사 제공 방법
 - 1) 응급 검사의 경우 다른 정규 검사보다 먼저 검사를 실시한 후 영상을 전송 한다.
 - 2) 응급 검사의 경우 영상검사 OCS 처방 Emergency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처방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 촬영을 실시하도록 한다.
 - 3) 정규시간외에는 영상의학과 직원을 호출(Call)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90분 이내 촬영을 실시한다.
 - (1) 정규시간 평일: 09:00 ~ 18:00 토요일: 09:00 ~ 13:00
 - (2) 응급검사의 경우 병동에서 호출(Call) 근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콜 당직 근무자는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.
 - (3) 응급 검사의 종류 및 증상은 규정 [W-3.3.6 안전한 영상검사 결과보고] 중 CVR 대상 질환을 의심 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.
- 4. 검사 전 준비사항
 - 1) 환자 준비 절차
 - (1) 본원의 [W-1.1.1 정확한 환자확인 규정]에 따라 환자이름과 등록번호 (단, 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앞자리(생년월일)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환자 확인을 실시한 후 환자인식지표 (입원환자 : 환자인식밴드, 외래환자 : 의무기록상 등록 된 주민번호 앞자리(생년월일)를 확인하고 처방에 따라 촬영부위 및 검사 부위를 확인한다.
 - ① 검사 별 환자 준비
 - 가. 일반촬영 : 복부 촬영 시 환자에 따라 장 준비(Bowel preparation)가 되었는지 확인 한다.
 - 나. CT 촬영 : 복부 및 골반 검사, 폐 검사 등 조영제 검사의 경우 6시간이상의 금식과 필요시 장운동 억제제 부스코판 주사 여부를 확인한다.
 - 다. MRI 촬영 : 복부 및 골반 검사의 경우 6시간 이상 금식 여부를 확인한다.
 - 라. 초음파 촬영 : 복부 및 골반 검사의 경우 6시간 이상의 금식 여부와 골반계통의 검 사 시 필요에 따라 방광에 소변을 채웠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.
 - 마. 특수촬영(C-ARM), 골밀도 검사, 동맥경화도 검사 : 해당 없음
 - 2) 검사 부작용 예방 및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한 확인 절차
 - (1) 이전 조영제 부작용 경험
 - ① 의무기록 상에서 확인한 후 환자에게 질문을 통해 재차 확인한다.
 - ② 혈관에 투여되는 조영제는 피부반응 검사 또는 혈관에 소량 점적 주입 후 환자의 반응을 살펴 부작용을 확인한다.
 - ③ OCS 에서 으로 조영제 부작용 및 약물 부작용에 대해 확인한다.
 - ④ 조영제 사용 지침을 숙지한 후 시행한다
 - 가. 조영제 명을 확인한다.
 - 나. 조영제를 개봉한다.
 - 다. 조영제 사용은 개봉후 10시간 이내에 사용함을 원칙
 - 라. 개봉 후 10시간이 경과한 조영제는 파기함을 원칙
 - ⑤ 조영제 온장고 사용 지침을 숙지한 후 시행한다
 - 가. 조영제는 실온(30℃이하) 보관하며, 주사용 조영제는 사용시 체온까지 데워 사용할 수 있다.



- 나. 온장고에 주사용 조영제 보관 시 40℃미만으로 온도를 유지한다. (안정성: 40℃미만 보관 시 6개월간 안정)
- 다. 온장고의 온도를 매일 2회로 체크리스트를 기록하며, 온도기록지는 6개월간 보관한 다
- (2) 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확인
 - ① 임신
 - 가. 방사선을 사용하는 근무자는 방사선 피폭에 앞서, 가임 연령대의 여성 환자에 대해 서는 임신 중인지 혹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 후 검사를 실시한다.
 - 나. 임신한 환자는 태아선량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 방호 장비를 착용 후 검사를 실시한다.
 - ② 인공제세동기 및 심박동기 사용자는 MRI 촬영실 출입을 금한다.
 - ③ 약물복용 확인(메포민): CT 검사 중 조영제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복용은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.(진료 시, 검사 전 환자에 게 혈당 강하제 복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)
 - ④ 이전 검사 시 조영제 사용여부 확인
 - 가. 일반촬영 : 척추 골반 관련 촬영 시에 문제가 되므로 촬영 전에 타병원에서 상부위 장관 조영촬영 등을 하였는지 확인한 후 촬영일 실시하고 48시간이내에 조영 검사를 실시한 경우 촬영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.
 - 나. CT 촬영, 골밀도 촬영
 - 복부 CT 검사 전 위장관 조영술, 대장 조영술, 신우 및 요로 조영 등은 피한다.
 - © 조영제 사용 CT와 골밀도 검사가 같이 처방이 난 경우 골밀도 검사를 먼저시행하고 조영 검사를 나중에 시행한다.
 - © 골밀도 검사의 경우 모든 조영 검사 전에 실시한다.
 - ② 내시경 검사와 CT 검사 중 CT 검사를 우선 시행한다.
 - MRI 조영 검사와 CT 조영 검사 중에서는 MRI 검사를 먼저 실시 한 후 시간 간격을 두고 CT 조영 검사를 실시한다.
 - 라. MRI 촬영
 - 복부 MRI 촬영 시 위장관 조영술, 대장 조영술 촬영 등을 하였는지 확인 후 촬영을 실시하며 CT 복부 검사와 같이 처방이 난 경우 MRI 촬영을 먼저 한 후 CT 촬영을 한다.
 - © 체내 금속물질(두개강 내, 복부 또는 수술 후 금속물질, 파편) 등이 있을 경우 판독의나 임상의와 상의 하여 검사시행 여부를 결정한다.
 - © 인공제세동기 및 심박동기 착용 환자는 검사를 취소한다.
 - ② Infusion pump을 부착한 경우 임상의와 상의 한다.
 - ① 보청기는 검사 전 설명 후 보호자가 보관한다.
 - 🗈 인공달팽이관 이식환자, 눈에 금속물질 이식환자 취소한다.
 - ② 폐쇄 공포환자는 담당의와 상의하고, 재검사 또는 sedation을 한다.
 - 마. 초음파 촬영
 - 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와는 상관없으나 단 복부 검사의 경우 위내시경 검사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한다.
 - 바. 동맥경화도 검사 : 해당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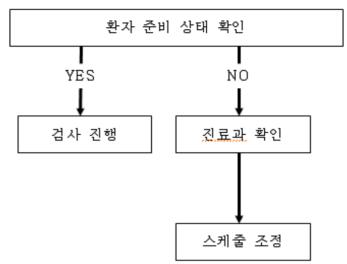


사. 특수촬영(C-ARM) : 위장관 조영술, 대장 조영술 검사 여부를 확인 후 촬영하도록 한다.



- 5. 정확한 영상 검사를 위한 절차
 - 1) 검사 의뢰목적 확인 절차
 - (1) 대상 :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
 - (2) 검사실에서 검사 전 확인 : EMR 상에서 검사 요청일, 검사의뢰 목적, 의뢰 의사명 등을 확인 한다.
 - (3) 정확한 검사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확인
 - (4) 검사수행방법 : 검사수행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[영상의학과 지침(검사별 수행방법)]에 따른다.
 - (5) 이상치 발생 시 판독 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
 - ① 판독 결과 및 내용은 PACS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 - ② Examined : 검사가 시행 되어진 일반적인 상태
 - ③ Verified : 영상 보정이 된 상태
 - ④ Transcribed : 판독이 완료되었으며 수정 가능한 상태
 - ⑤ 이상치 발생 시 신뢰성 유지 절차는 [W-3.3.6 안전한 영상검사 결과보고] CVR 의 내용에 따른다.
 - (6) 영상검사 결과 보고 및 안전관리 절차
 - ① 응급 및 정규검사 보고 절차(촬영실에서의 영상의 전송 및 보고)
 - 가. 응급 검사의 경우 다른 정규검사보다 먼저 검사를 실시한 후 영상을 전송 한다.
 - 나. 모든 영상검사(응급검사포함)는 검사가 종료되면 환자의 신상정보과 촬영부위, 촬영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.
 - 다. 응급 검사의 경우 다른 정규 검사보다 먼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.





- 라. 응급 검사의 경우 검사 처방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에 촬영을 시행하도록 한다.
- 마. 정규 검사의 경우 540분 이내에 촬영을 시행하도록 한다.
- 바. 정규시간외에는 영상의학과 직원을 호출(Call)하여 검사를 시행한다.
 - -정규시간 평일 09:00 ~ 18:00 토요일 09:00 ~ 13:00
 - -응급검사의 경우 병동에서 호출(Call) 근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콜 당직 근무자는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.
- ② 확인 된 영상은 즉시 PACS 서버로 전송한다.
- ③ PACS Viewer를 통해 전송된 영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.
- ④ PACS 상에서 영상의 Verify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고 영상의 화질을 최적화 하도록 한다.
- ⑤ PACS 서버에 전송된 영상에 촬영자명을 기입한다.(촬영 실명제)
- ⑥ PACS 서버에 영상이 전송되면 OCS에서 전송 완료로 표시되며 PACS Viewer상 환자의 검사목록이 나타남으로 전송과 동시에 검사 의뢰가 완료되어 보고 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① 응급검사 및 정규 검사의 촬영 처방에서 촬영완료까지의 시간을 영상의학과 OCS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한다.
- ⑧ 영상검사 안전관리
 - 가.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하는 영상검사는 PACS 관리자(진료지원부 과장, 영상의학과 책임)에 의해 영상의 삭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,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.

6. 정도관리 수행절차

- 1) 외부정도관리 :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(X-RAY, CT, 골밀도 측정기, C-ARM)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 의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3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 받는다.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특수의료장비(MRI, CT)의 정도관리는 의료법 제 38조 특수의료장비 관한 규칙에 의거 매년 서류검사와 3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아 품질관리검사필증을 수령하여 비치하도록 한다.
- 2) 내부정도관리 : 초음파장비, 동맥경화도 장비, CR(Cassette Reader기)등은 일상점검을 통해 장비 담당자가 장비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.



구 분		내부정도관리	외부정도관리			
		일상점검	위탁점검	의료영상품질 관리원 검사		질병 관리본부장 지정검사
점검주기		매일		1년 (서류)	3년 (정밀)	3년(정기)
특수 의료 장비	MRI	0	매월 및 격월	0	0	
	СТ	0	격월	0	0	0
그외 영상 장비	MAMMO	0	6개월	0	0	0
	X-RAY	0	매년			0
	C-ARM	0	매년			0
	BMD (DEXA)	0	매년			0
	초음파장비, 동맥경화도 장비, CR	Ο	필요시			

7. 영상검사 외부 의뢰체계

본원은 영상검사 외부 의뢰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외부 의뢰 체계는 수립하지 않는다.



입안자	규정관리위원장	
승인책임자	병원장	
서명일		